

## 大田直轄市低所得層住民子女獎學金支給條例(案)

議案 番號	89
----------	----

提出年月日：1992. 1. 13

提出者：大田直轄市長

### 1. 提案理由

低所得層 住民의 子女中 가정형편으로 中學校以上の 高等教育을 받기 困難한 才能있는 學生을 選拔 獎學金을 支給 零細民에서 벗어나도록 도와 주고 地域社會 開發에 貢獻할 수 있는 有能한 人力을 開發하기 위하여 장학금 支給에 관한 事項을 條例로 만들고자 함

### 2. 主要骨子

가. 獎學金 支給對象者를 生活保護對象者 子女, 零細 農民의 子女, 其他 低所得 層의 子女中 學業 成績이 우수한 中학생 및 高등학생으로 規定 하고 다른 기관으로 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除外함(안 제 2조)

나. 장학금은 特別獎學金과 一般獎學金으로 區分 支給하되 支給額은 每年 市長 이 定하되 特別獎學金은 가용재원의 20%범위내에서 학업성적 10%內 一般 獎學金은 가용재원 80%범위내 학업성적 30%以內의 학생으로 함 (안 제 3, 4조)

다. 獎學生 選拔은 區廳長이 推薦 市政調整委員會에서 選拔함(안 제 5조)

라. 獎學生으로 選拔된 者가 학업성적 불량, 퇴학, 정학, 휴학 등 징계처분, 他 市道 전학, 學費以외의 目的에 使用, 經濟力 向上으로 獎學金 支給이 必要 없을 때 等에는 장학금 지급을 停止하고 該當 分의 人員을 새로 選拔함 (안 제 6조)

마. 장학기금의 造成은 目標額 到達時까지 一般 豫算 支援金에 의하고 獎學基金은 稅入稅出外 現金으로 管理하며 利率이 높은 方法으로 預置함(안 제 7조)

바. 獎學金의 財源은 利子收入金으로 充當함(안 제 8조)

### 3. 參 考 事 項

가. 立 法 豫 告

1) 期 間 : '91. 12. 6 - 12. 25 (20日間)

2) 方 法

- ① 市 公報揭載('91. 12 第 75號)
- ② 揭 示 公 告 : 市, 區, 洞 揭 示 板

3) 內 容

- ① 條 例 制 定 趣 旨
- ① 獎 學 金 支 給 對 象 者

4) 豫告結果 : 市 民 意 見 沒 有

나. 市 政 調 整 委 員 會 審 議 結 果

- ① 審 議 日 : '92. 1. 9
- ① 審 議 方 法 : 書 面 審 議
- ③ 審 議 結 果 : 原 案 可 決 (全 體 委 員 16 名 中 15 名 贊 成)

다. 根 據

內務部 低所得 住民子女 獎學金 支給條例 準則  
- 內務部 制定 10200 - 010537('91. 11. 1)號

라. 其 他

自治區 低所得 住民子女 獎學金 支給條例 準則 示達  
- 社會 31330 - 31849('91. 11. 19)

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

## 대전직할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직할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장학금의 지급대상)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자는 제외한다.

1.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2. 영세농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3.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제 3조(장학금의 종류)①장학금은 특별 장학금과 일반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특별장학금 지급대상은 가용재원 20%범위내에서 학업성적이 학년 재적인원의 10%이내의 학생으로하며, 일반장학금 대상은 가용재원 80%범위내에서 학업성적이 학년 재적인원의 30%이내의 학생으로 한다.

제 4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전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 5조(장학생의 선발)①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구청장은 제 3조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

2. 시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구청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 6조(지급정지)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
3. 타 시(도)로 전학하였을 때
4.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5.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②장학금 지급 정지처분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한다.

제 7조(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①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한다.

②장학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제 8조(장학금의 재원)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9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大田直轄市低所得層住民子女獎學金支給條例案

## 審 查 報 告

1992年 1 月 21 日

文教・社會 委員會

### 1 審 查 經 過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 1992年 1月 13日, 大田直轄市長

나. 回 附 日 字 : 1992年 1月 14日

다. 上 程 日 字 : 第8回 大田直轄市 議會(臨時會)

第1次 文教・社會委員會 (1992. 1. 21)

上程, 審議, 議決

###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大田直轄市 保健社會局長)

#### 가. 提 案 理 由

低所得層 住民의 子女中 가정형편으로 中學校以上の 高等教育을 받기 困難한 才能있는 學生을 選拔 獎學金을 支給 零細民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地域社會 發展에 貢獻할 수 있는 有能한 人力을 開發하기 위하여 獎學金 支給에 關한 事項을 條例로 만 들고자 함.

## 나. 主要 骨 子

- (1) 獎學金 支給對象者를 生活保護對象者 子女, 零細 農民의 子女, 其他 低所得層의 子女中 學業 成績이 優秀한 中學生 및 高等學生으로 規定하고 다른기관으로 부터 獎學金을 받고 있는 자는 除外함(案 第 2 條)
- (2) 獎學金은 特別獎學金과 一般獎學金으로 區分 支給하되 支給額은 每年 市長이 定하며 特別獎學金은 可用재원의 20%범위 내에서 學業성적 10%內, 一般獎學金은 可用재원 80%범위내 學業성적 10%以內의 學生으로 함(案 第 3,4條)
- (3) 獎學生 選拔은 區廳長이 推薦 市政調整委員會에서 選拔함 (案 第 5 條)
- (4) 獎學生으로 選拔된 者가 學業성적 불량, 퇴학, 정학, 휴학 등 징계처분, 他市道 轉學, 學費以外의 目的에 使用, 經濟力 向上으로 獎學金 支給이 必要없을 때 等에는 獎學金 支給을 停止하고 該當 分의 人員을 새로 選拔함(案 第 6 條)
- (5) 장학기금의 造成은 目標額 到達時까지 一般 豫算 支援金에 의하고 獎學基金은 歲入 歲出外 現金으로 管理하며 利子率이 높은 方法으로 預置함(案 第 7 條)
- (6) 獎學金의 財源은 利子收入金으로 充當함(案 第 8條)

### 3. 專門委員 檢討 報告 要旨(專門委員:金鎮鎬)

○ 本 條例 制定案은 低所得層 住民의 子女中 家庭형편으로 中學校 및 高等學校教育을 받기 困難한 學生중 才能있는 學生을 選拔하여 獎學金을 支給하므로써 低所得 零細民 子女들의 教育機會를附與하며 有能한 人力 開發을 爲한 獎學金 支給에 關한 事項을 條例로 規定한다는 內容으로써

○ 主要 內容으로는

첫째, 獎學金 支給을 爲한 所要財源은 低所得 住民 支援 施策 強化 指針(90. 11. 6. 內務部)에 根據하여 獎學 基金을 造成, 그 利子 收入으로 充當되는 바 現在 95년까지의 目標額 10億원중 一般會計 支援金 4億원이 積立되어 있음.

둘째, 獎學生 選拔 및 獎學金 支給은 一般獎學生과 特別獎學生 으로 區分하고 生活保護對象者 子女, 零細農民의 子女, 其他 低所得層의 子女中 學業成積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學生을 選拔(區廳長 推薦, 市政調整委員會에서 選拔)하여 可用財源의 範位 內에서 獎學金을 支給하는 內容으로 되어 있음.

셋째, 本 條例 制定案은 “內務部 低所得 住民 子女 獎學金 支給 條例 準則”(內務部 財政 10200-010537, 91. 11. 1호로 시달)에 근거하고 있으며,

- 立法 豫告 (91. 12. 6~12. 25)

- 市政調整委員會 審議, 可決(92. 1. 6)된 事項임.

- 以上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本 條例 制定案은 相對的으로 어려운 生活을 하고 있는 低所得層의 子女들에게 獎學金을 支給 하므로써 成積이 優秀함에도 進學을 포기하는 이들 子女들에게 教育 機會를 附與하여 人材 養成에 寄與하고 또한 이들의 生活能力을 高취시킨다는 內容으로써 別다른 問題點이 없는 것으로 思料됨.

#### 4. 質疑 및 答辯 要旨

없 음

#### 5. 討 論 要 旨

없 음

#### 6. 小委員會 審査 報告 要旨

없 음.

#### 7. 審 查 結 果

原案 대로 可決

#### 8. 體系 字句 審査 內容

없 음